

##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 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7조 (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화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기 금 출납부

년월일	적요	수입	지출	결재			비고
				담당	계장	과장	